

---



# 의정활동보고서



제313회 임시회(2020. 1. 29 ~ 2. 5)



경상북도의회



##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  
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신년 설계를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기운을 받아서 금년에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회복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내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 취업난의  
지속 등으로 살림살이가 꽉꽉해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은 도민과  
의원들이 힘을 뭉치고 공직자들이 사력을 다한 결과  
큰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회의 여야 정쟁 속에서도 우리  
경북에 수혜가 돌아오는 포항 지진 특별법과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너진 도시기반에 활력이 살아  
나고 지역의 관광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북형 일자리와 스마트산단,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견인하게 될  
대형 국책사업도 유치하고, 국비도 사상 최대인 4조  
5,0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통합신공항이 수년 내에 완공되어 하늘길이  
열리고, 영일만 신항이 활동해 거점항으로 조성되어  
바닷길이 열리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경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올 경자년에도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철강·원자력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2차 전지 등 미래먹거리인 4차 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우리 경북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우리 도민들과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번째 해에  
접어들어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향한 초심과 약속한 과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기입니다.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금년도 도정 방향을 설계한 업무보고와 각종  
안전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의정을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중국발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국가적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으로 언제나 아침이면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마다 연초에 계획했던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식



##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2
III. 의안처리	18
IV. 민원처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1
VI. 5분 자유발언	23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3
□ 남진복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7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0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33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36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40

---

부 록

---

□ 조례 안(3건) .....	45
□ 결의안(1건) .....	63
□ 동의안(1건) .....	67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는 2020년 1월 2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10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6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9일(수)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수) 11시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두 번째 해에 접어들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역주민을 향한 초심과 약속한 과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또한 최근 중국발 우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국가적 비상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하며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14회 임시회로 2020년 3월 2일 오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2. 회기

가. 회의기간 : 2020년 1월 29일 ~ 2월 5일(8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17회)
- 위원회

(단위: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6	2	2	2	1	1	1	1	-	6
누 계	619	51	80	75	65	56	58	67	86	81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4:00 (제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이종열, 남진복, 김대일 의원)</li> <li>□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li> <li>○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li> <li>○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li> <li>○ 휴회의 건 (의장 제의)</li> </ul> </li> </ul>	
2. 5(수) 11:00 (제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이재도, 박창석, 박미경 의원)</li> <li>□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TF 이종열 신임단장 인사</li> <li>○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대일 의원 대표발의 (김대일 · 김상현 · 김영선 · 박미경 · 박승직 · 박차양 · 신효광 · 이선희 · 이종열 · 임미애 · 정세현 의원 발의)</li> </ul> </li> <li>○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박채아 · 박관수 · 박권현 · 김영선 · 황병직 · 이철구 · 남진복 · 김대일 · 김득환 · 박현국 · 윤승오 · 박영서 · 정영길 · 박영환 의원 발의)</li> </ul> </li> <li>○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li> <li>○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li> <li>○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의장(방유봉) 당선인사</li> </ul> </li> </ul> </li> </ul>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li> <li>○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li> </ul>	
2. 26(수)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li> <li>○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협의의 건</li> </ul>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2. 3(월)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경제실 소관)</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학산업국 소관)</li> </ul>	
2. 4(화) 10: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li> <li>○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박채아·박관수·박권현·김영선·황병직·이칠구· 남진복·김대일·김득환·박현국·윤승오·박영서· 정영길·박영환 의원 발의)</li> </ul> </li> <li>○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li> <li>○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투자유치실 소관)</li> </ul>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30(목) 10: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아이여성행복국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li> </ul>	
2. 4(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인재개발원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관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li> </ul>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2. 4(화)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li> </ul>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30(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li> </ul>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30(목) 10:2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li> <li>○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li> </ul>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30(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li> <li>○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li> </ul>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1:3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업무보고의 건(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li> </ul>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2. 5(수) 10:00 (제4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20년도 업무보고</li> </ul>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업무보고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5:30 (제5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5:20 (제7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 29(수) 11:30 (제6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input checked="" type="radio"/>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III. 의안처리

구 분	접수 ③+⑤+⑦	처리 ④+⑥	의 결				철 회 ⑧	계 류 ⑨	비고	
			계 ⑩	가 결		부 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9 (422)	9 (414)	9 (412)	9 (378)	0 (32)	0 (2)	0 (0)	0 (2)	0 (8)	
조례안	소 계	3 (228)	3 (224)	3 (224)	3 (204)	0 (19)	0 (1)	0 (0)	0 (0)	
	의회안	2 (154)	2 (150)	2 (150)	2 (141)	(9)			(4)	
	도지사제출	1 (49)	1 (49)	1 (49)	1 (41)	(8)				
	교육감제출	0 (25)	0 (25)	0 (25)	(22)	(2)	(1)			
규칙안	0 (3)	0 (3)	0 (3)	(3)						
예산·결산	0 (20)	0 (20)	0 (20)	(11)	(9)					
동의·승인	1 (57)	1 (56)	1 (54)	1 (49)	(4)	(1)		(2)	(1)	
건의안	0 (2)	0 (2)	0 (2)	(2)						
결의안	1 (33)	1 (33)	1 (33)	1 (33)						
기타안	4 (79)	4 (76)	4 (76)	4 (76)					(3)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13회)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종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38)	(10)		(2)	1 (7)	(3)	(1)	(10)	(2)	(3)
의회 운영										
기획 경제	(4)			(2)			(1)	(1)		
행정 보건복지	(8)	(7)								(1)
문화 환경	(9)						(9)			
농수산	(7)	(3)							(2)	(2)
건설 소방	1 (7)				1 (7)					
교육	(3)					(3)				
특별 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나. 처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증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37)	2 (37)				1
의회운영						
기획경제	(4)	(4)				
행정 보건복지	1 (8)	1 (8)				
문화환경	(9)	(9)				
농 수 산	(7)	(7)				
건설소방	1 (6)	1 (6)				1
교 육	(3)	2 (3)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9건(조례안 3, 동의안 1, 결의안 1, 기타안 4)

2. 처리 의안 : 9건

○ 원안가결 의안 : 9건(조례안 3, 동의안 1, 결의안 1, 기타안 4)

3. 의안접수 내용

○ 조례안 : 3건(원안가결 3)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2020.1.2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	2020.1.17.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	도지사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동의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2020.1.17.	교육감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원안 가결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2020.1.2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가결

○ 기 타 안 : 4건(원안가결 4)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1.29.	의 장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 가결
2	"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3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	"	휴회의 건	"

III. 조례 공포 사항 : 3건(도 3)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307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2. 17.	
2	제4308호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20.2. 20	
3	제430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 VI. 5분 자유발언

□ 2020년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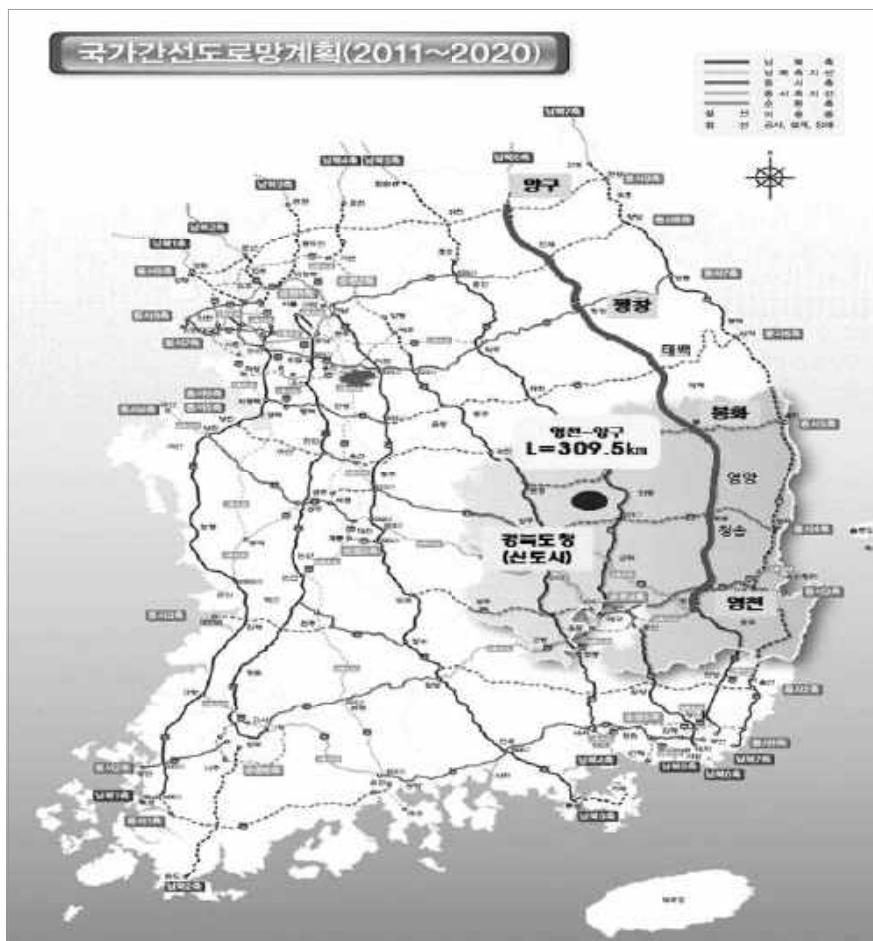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촉구»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경자년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소외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추진과 이를 위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관련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19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북7축, 동서9축 간선도로 중 남북6축에 해당하는 경북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309.5km 구간으로 총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관련 10개 시·군이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같은 해 경상북도지사와 강원도지사의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 체결에도 20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 가장 높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송, 영양, 봉화군 등 북부지역 소멸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가치로 자리 잡은 지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영양을 비롯한 이들 낙후지역에 남북6축 고속 도로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은 관광개발 촉진과 주민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구간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축으로 화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이 살아 숨 쉬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강원도 양양은 전국 '서평 1번지'로 주목받으며 2002년 이후 15년째 줄어들던 인구가 2018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강원도 남부지역의 태백시·정선군 등은 경북 북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역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도로 건설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구 2만 7,000명에 불과한 양양군에 고속도로가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의 논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경북 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발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관련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첫 의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께서 남북6축 고속도로 추진을 공언하셨던 만큼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단,  
울릉도 해상항로 안전성 확보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의 부당한 획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울릉도 해상항로의 수송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일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의원 지역구인 울릉군을 현재의 포항·남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전라북도 김제·부안 인구 13만 9,000명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하한선으로 삼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  
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울릉군을 갖다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늘 포항과 함께했습니다.  
연인원 10만 명의 울릉군민이 주된 교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항은  
3만 명이 넘는 출향인까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오래 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울릉군의 일상적인 생활권  
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적·물적 교류와 정서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선거구에 울릉군을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책동은 지역 현실과 주민정서를 짓밟는 무도한 행위이고, 특히 지리적 여건과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반영해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거 15대 총선 때도 조정이 시도된 적 있으나 같은 이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는 전 군민이 공분한 가운데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어제부터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군수, 군의회 의장 등 주민대표 30여 명이 국회에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당한 주장이 외면될 경우 군민 총궐기와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표의 등가성만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고 대도시 비대화의 부작용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사안의 염중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항로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릉도는 동해상의 특수한 기상여건 등으로 연간 100여 일 정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에 울릉도는 기본이 2박 3일, 여차하면 4박 5일마다 열흘을 넘길 때도 다반사입니다.

다행히 이철우 지사님께서 해상교통을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여 1일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고, 특히 운항 손실까지 보전하겠다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울릉군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유치되는 대형여객선은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와 운항능력에서 현재 운항 중인 대형여객선의 수준을 뛰어 넘고, 특히 지역 농수산 특산물과 생필품 등의 화물을 충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선의로 추진한 사업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두고두고 원성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30년 대계인 동 사업이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될 일이기에 울릉군과 해운사 간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우리 도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선령이 만료되는 여객선 항로에는 반드시 수송 안정성을 담보할만한 중형급 이상의 대체선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도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1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도청신도시 및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 촉구»

안동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일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부권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이 될 통합신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에 밀려 낙후되어 왔던 북부권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도청신도시 행정 이원화 및 구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19년 도정 성과 보고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쉽게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행보는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다소 서두르는 경북도지사와는 달리 대구시장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동의하나 생활권과 경제권 우선통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경북의 앞날에 대해 그만큼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결과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제 막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도민, 특히 신도청 이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듯 가벼이 대하는 것에 도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1994년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공동 발전을 기대하던 안동과 예천을 비롯한 북부권 시·군들, 투자자, 소상공인, 신도시 주민 등 경북도청 이전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이들은 아직도 경상북도청 신도시가 북부권 균형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설익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도청신도시 확장과 북부권 발전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북부권은 또다시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부권 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북부권이 국민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역민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당초 산업화에 뒤처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도청이 이전한지 이제 겨우 4년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기대한 북부권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주변의 상권과 인구를 빼아들이고 있는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주변의 시·군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신도시 또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불편과 신도시의 경제성 혼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하기 전에 당초 도청 이전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북부권 관광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북부권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 이원화와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신도시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북부권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투표를 거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경북 북부권 발전 전략을 먼저 제시한다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2월 5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지방도 929호선(금오~양포 간) 4차로 마무리 촉구 관련》

자랑스러운 266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지방도 929호선 금오~양포 구간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4차로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북 동해안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약속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과 교통망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착공한 도 지방도 929호선은  
현재 국가산단 블루밸리 조성과 동해안권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도로를 제외하고는 부산, 울산을  
거쳐서 경주, 포항으로 진입하는 내륙도로로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포항~장기 간 확장사업이 용역비 등의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구간 중 3분의 2 구간은 4차로로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  
구간이 아직 2차로로 구간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29호선 오천~양포 구간은 187만 평의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와 직선으로 5분 거리에 인접해있고 해병대 군사 도로를 겸하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군 장비가 수십 대씩 이동하고 민간 차량 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금오~양포 구간은 지금 현재 도에서 타당성용역 조사 용역이 수행되고 있고, 이달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용역조사 결과가 2+1(3차로)로 결정 날 경우 지역에서는 엄청난 과장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블루밸리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금오~양포 구간은 반드시 4차로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2+1로 추진하게 된다면 병목현상 발생으로 도로가 결국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안보상의 문제로 인해 해병대 사령관이 경북도에 협조문까지 보낸 상황으로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좋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군용차량 이동 시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해안 해양관광의 관문으로의 역할과 촘촘한 연계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는 금오~양포 간 구간도 4차로로,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역 결과가 2+1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로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업비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달 MOU 체결을 위해서 전남도를 방문했을 당시 지방도 수준이 국도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한창 교통량이 빈번해야 하는 시간이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전남도는 어떤 기준과 논리로 교통량을 측정하고 지방도가 국도보다 나은 수준으로 건설되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만큼 전남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경북도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B/C 분석만을 가지고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의 우리 경북이 육지 속의 오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929호선 지방도 잔여구간 역시 반드시 4차로로 추진하여 경북 동해안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깨어있는 자각과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소명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도내 전염병 전파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에서 작금의 실태를 질병재난 수준으로 인식하여 시·군과 협력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감염병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년 2월 5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수산 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실시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1단계에서 10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

대구 고속항 이전부지  
군공항과 우리를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

00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배경 및 주제 8페이지

이전부지 선정기준이란?

—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고속항 공항 구조화 조성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관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고속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이전부지  
기준)」과 선정한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합니다.

27페이지

3단계 : 이전부지 선정

— 예컨대, 지자체 같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에 대구 고속항의 이전 유지를 신청합니다.  
— 마지막 국방부는 유치면 선정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한  
곳을 대구 고속항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이 때 이전부지 선정부지에 놓여  
있어야 하는 부지 면적은 「대구 고속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1월 21일은 8단계로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이 진행되는  
절차이며, 9단계 이전 부지 선정심의는 8단계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것이라고 자료집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의 선정 기준은 9단계 선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전할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 자료집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이전지를 확정한 적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종료와 동시에 법을 무시한 많은  
언론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 확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위  
군민이 불복하고 있다고 비난과 비판이 융단 폭격하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사실상 확정이라고 발표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하였습니다.

2020년 설 연휴 내내 군위군민과 출향인 모두 불쾌하고 억울한

새해를 보냈습니다. 법을 무시한 언론플레이와 여기에 함께한 일부 인사와 정치인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군위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군공항이전법 8조2항에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는 군위 우보의 찬성 76%와 군위 소보의 74% 반대라는 결과와 법에 따라 우보에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서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가 1등을 하면 우보가 되고, 공동 후보지인 군위군 소보와 의성 비안 둘 중 한 곳만 1등을 해도 공동후보지를 1등으로 확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성 비안이 1등을 했으니 군위 소보는 꼴찌를 했지만 같이 1등 한 것으로 보아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군위군 소보로 유치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군위군 소보면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투표하기 전에 7단계에서 국방부는 3,000억 원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투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청회 설명 중에서도 유치 신청은 주민 투표 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른다고 국방부 공항단장의 명확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군위군은 법을 준수했고 법대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3년 반 동안 대구·경북의 미래를 향해 반드시 미래가 있는 관문 공항을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합니다.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로의 셈법이 틀렸다고 탓하는 걸 보면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으로서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분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투표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등 서로 충돌된 내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된 기준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자체 간의 분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낸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회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서로 자극하는 언론플레이보다 모든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힘으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0년 2월 5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대상 확대 및 시행방식 개선 촉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 재난사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및 의료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6월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단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후 8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로타 바이러스의 대상이 아주 적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출생아 수 1만 4,700명 중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입니다. 예산도 도비 600만 원입니다. 경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에서는 생후 8개월 이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부담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구입단가가 집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명당 21만 원인 3회 접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13만 2,000원인 2회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에 따라 2회 접종을 명시하고, 2회 접종을 할 경우 1명당 약 7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위탁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주사 1회당 3, 4만 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여 시행비를 절감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도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는 약 3만 8,000명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8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1만 4,400명, 예산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역시 도비는 고작 4억 원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합니다.

80세 이상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을 하였거나 고령으로 예방접종을 꺼리고 있어 실제 접종률이 30, 40%로 수준으로 예측한다는 답변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30%를 추산할 경우 대상은 4,320명, 예산도 4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관련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예산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행 방식에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고령화와 저출생을 고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걱정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방향입니까?

지난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로 집행부, 보건소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쳤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철우 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과 예산을 크게 축소 편성하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례 입법 발의 162건 중 의원입법이 108건으로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과연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즉시 개선하여 로타 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고령화를 고민하는 도지사님의 확실한 의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 조례 안(3건) .....	45
□ 결의안(1건) .....	63
□ 동의안(1건) .....	67



## **━ 조례안 ━**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20. 1. 29)
-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20. 1. 17)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20. 1. 1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식

2020년 1월 2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9명 이상 11명 이내”를 각각 “11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기획경제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li>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li>4. 문화환경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li>5. 농수산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li>6. 건설소방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li>7. 교육위원회 <u>9명 이상 11명 이내</u></li> </ol>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11명 이내</u></li> <li>3. <u>11명 이내</u></li> <li>4. <u>11명 이내</u></li> <li>5. <u>11명 이내</u></li> <li>6. <u>11명 이내</u></li> <li>7. <u>11명 이내</u></li> </ol>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식

2020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개
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식

2020년 2월 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경상북도 포상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미풍약속의 순화·양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기양양과”를 “사기를 북돋우고”로 한다.

제3조(「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을 “전염병”으로 한다.

**제4조(「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공유 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6조(「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7조(「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처리”로 한다.

**제8조(「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p>1. · 2. (생 략)</p> <p>3. 사회 도의와 <u>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u> 출선·수범한 경우</p>	<p>제5조(표창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u> —————</p>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기능장려) 도지사는 기능인 <u>사기양양과</u>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9조(기능장려) —————— <u>사기를 북돋우고</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1조(병가)</b> ① 도시사는 소속공무원이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u>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u>제20조</u>  <u>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u>          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전염병의 이환으로</u>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전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li> </ol> <p>② · ③ (생 략)</p>	<p><b>제21조(병가)</b>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u>제20조</u></p> <p><u>제4항에 따라</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전염병</u>—————  —————.</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u>통리</u> 한다. ② (생략)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u> ——. ② (현행과 같음)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u>계리의 원칙</u> )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u>계리</u>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u>계리</u>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7조( <u>회계처리의 원칙</u> ) ① ————— ————— ————— 처리 —————. ② ————— 처리—————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u>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u>계리</u>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의 원칙) ① _____ _____ _____ 처리 _____. ② _____ _____ 처리 _____ _____.

##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 략)</p> <p>③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제리할 수 있다.</p> <p>④ · ⑤ (생 략)</p>	<p>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_____</p> <p><u>회계처리</u>_____.</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 결 의 안 ━**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20. 1. 29)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식

2020년 2월 5일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 1. 제안이유

-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20. 3. 2.(월) 13:40(제1차 본회의)
  - 2020. 3. 13.(금) 11:00(제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 동의안 ▬**

-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교육감('20. 1. 17)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식

2020년 2월 5일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주요내용

1. 대상 사업 :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2. 대상 기관 :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
3. 위탁 기간 : 2년
4. 사업 비 : 9억 원(연간 4억 5,000만 원)
5. 사업 내용
  - 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방문 맞춤형 관리
  - 학교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 전문 인력 학교 위기개입 역량 강화

□ 변경사항

구분	동의	변경 동의(안)
대상기관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
위탁기간	3년	2년

# 의정활동보고서

(제313회 임시회)

●  
2020. 2. 인쇄 / 2020. 2.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  
<비매품>